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1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한병도 · 이광희 · 이재강
장철민 · 허 영 · 윤준병
이기현 · 양부남 · 송기현
강선우 · 안태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운영하는 기금관리조합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과분석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특정하여 단일기관이 성과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보험·채권·공제·자산운용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인구·정주·산업·청년유입 등 복합지표 중심의 성과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금의 핵심 목표인 정주인구 유입, 청년 정착 등에 대한 평가 보다는 집행률·사업완료율 중심의 정량평가에 그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금 사업의 절반 이상이 일정 지연·예산 증액 등 변동이 있었음에도 최고등급을 부여받는 등 실적과 평가 결과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미흡하

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무관한 획일적 평가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 계획을 반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에도 기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성과분석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행정·재정·인구정책·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기관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 정주효과 분석
 2. 투자계획 대비 이행률, 사업 일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3.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실적
 4. 사업일정 지연, 예산증액 등 변경사유 및 후속조치 결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분석 결과를 보완하거나 성과분석을 다시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 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 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u>공개하여야</u> 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 -----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 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u><신 설></u>	②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 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업 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 인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 계법인
	3. 행정·재정·인구정책·도시 계획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법인 또는 기관에 준하 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금관리조합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 정주
효과 분석

2. 투자계획 대비 이행률, 사업
일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3.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실적

4. 사업일정 지연, 예산증액 등
변경사유 및 후속조치 결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④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
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분석
결과를 보완하거나 성과분석을
다시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⑤ ·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④ <u>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⑦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u>----- ----- -----.
---	---